

2022년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제1차 항소위원회 결정문

결정

대상자: 서주원 선수 (L&K)

주소: 서울 서초구 본마을길

주문

항소위원회는 해당경기 심사위원회가 항소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은 결정이 상당부분 타당하다고 판단하나, 형평성의 이유로 당시 페널티가 다소 과중했다고 보아, 당초 내려진 20초 시간 가산 결정을 경고로 조정한다.

이유

1. 대상자의 지위

대상자는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에 등록된 드라이버 라이선스 보유자이다.

2. 해당 심사위원회의 당시 결정

2022년 6월11일 열린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제3라운드 슈퍼6000 클래스를 심의한 해당 심사위원회는 22랩 턴18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참가자인 #12 황진우와 #94 서주원의 의견 청취 및 차량 조작 데이터 현장 확인, CCTV와 대회 중계 영상을 분석 등을 통해 대회 스포츠 규정 39조를 근거로 #94에 결승 기록 +20초 가산 페널티를 결정하였다.

3. 적용 기준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대회 스포츠 규정 39.1.4항 및 39.3항 적용

4. 판단

본 항소위원회는 해당 대회 심사위원장, 항소자 및 팀관계자, 사고 당사자(대리인)의 의견 청취와 해당 포스트 오피셜 보고서, 당시 심사 결정문,

인제 스피디움의 CCTV와 차량 내부 카메라 영상, 방송 중계 영상, 센서로 측정한 차량 조작 데이터 자료 등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항소위는 우선 항소자가 규정된 시간안에 항소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판정 당시 시점 기준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당일 경기에서 항소자는 본인의 드라이빙으로 본 사안 외 페널티 부과가 타당한 사고도 유발하였으나, 본 항소위는 항소의 대상이 된 사고 이외의 건은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

항소위는 추가 자료를 포함한 전체 증거 및 증언을 살펴본 결과, #12와 #94 모두가 대회 스포츠 규정 40.1.1항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위는 두 차량의 조작 데이터 및 상대차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12의 증언 등의 자료가 쌍방의 책임을 입증할 근거이자, 고의성은 없었다는 양측 모두의 주장을 상당부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항소자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인정하나 벌칙의 정도는 동일 경기의 다른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도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해 당초 가해진 20초 시간 가산 페널티를 경고로 조정하는 결정을 내린다.

항소위는 대회특별규정이 경고에 대해 3회 누적시 10그리드 강등 처벌하는 등 엄중한 벌칙으로 다루고 있음을 감안하였다.

#12의 책임 처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해석상 항소위의 권한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본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2022년 7월 4일

(사) 대한자동차경주협회 향소위원회

위원장 김상덕 

위원 김덕호 

위원 공준덕 